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(안)

의 안	
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2. 5. . 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위탁사무명 :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
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O 추진근거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 제5항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- 「시회복지시엄법 시행규칙」 제21조(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), 제21조((시설의 위탁)
- 「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5조 제6조 제10조
- 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|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
- O 추진 필요성
-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위·수탁 협약기간이 2022.8.24.만료됨에 따라, 민가위탁(재계약)을 검토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능률성 항상 및 전문성 확보

3. 위탁사무 내용

- 장애인복지관 운영
- 상담·사례관리(사례발굴, 지역회의 등)
- 가능강화지원(운동·지각·의사소통 항상(재활치료), 학습능력 및 사회적응력 항상 등
- 장애인 가족지원사업(가족기능 강화, 프로그램 운영 등)

-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
-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지원
-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평생교육 지원
- 사회서비스 지원(장애인 활동지원 등)
- 운영지원 및 기획·홍보

4. 위탁시설 현황

)	시설명	위치	규모	종사자 현황
1	하남시	경기도 하남시	6,446㎡	44명
	인복지관	미사강변남로 56(풍산동)	(ㅈ하1층,ㅈ상4층)	(주 <u>)</u> 보호센터 포함)

- 5. 민간위탁기간 : 2022.8.25. ~ 2027.8.24.
- 위·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(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의2)

6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2022년 예산	산출근거
장애인복지관 운영	2,502,980	- 인건비 : 1,898,980천원
(주간보호센터 포함)		- 운영비 : 604,000천원

7. 수탁자 선정방식

- 기존 수탁기관인 '대한예수교장로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'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, 총점대비 70%이상일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함.
-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미흡할 경우 선정제외 및 공개모집 추진

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호의 특 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함.
- 장애인복지관 특성 상 각종 재활·심리치료 등 사회재활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여, 법인 위탁 운영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내실화 도모
- 사업의 연속성 및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의 이점 등으로 재계약 우선 검토

9. 향후 추진계획

- 2022. 7월 : 위탁기관 민간위탁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
- O 2022. 8월 : 위·수탁 운영협약 체결

10. 성과평가 결과

- 「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」를 활용 및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(2명)를 통한 서면 · 현장 방문평가결과 100점 중 97.7점
- 11. 관련 법령 및 조례 : 붙임 1

불임1

관련 법령 및 조례

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21. 12. 21.] [법률 제18618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복지정책과: 총칙, 사회복지사 자격 등) 044-202-3022 보건복지부(사회서비스자원과: 사회복지법인, 임원, 시설) 044-202-3258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 함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>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1, 8, 4, 2012, 1, 26, 2016, 2, 3, 2017, 10, 24.>
- 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범인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, 15.>
- 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9. 1. 15.>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, 8, 4, 2012, 1, 26, 2019, 1, 15>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[제목개정 2011. 8. 4.]

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22, 1, 28.] [법률 제18333호, 2021, 7, 27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장애인정책과) 044-202-3282 보건복지부(장애인권익지원과) 044-202-3302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함 수 있다.

-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-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1. 3.30.2019.1.15>
-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「의료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11. 3. 30., 2019. 1. 15.>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·신고·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3. 30., 2019. 1. 15.>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[시행 2021, 12, 31.] [보건복지부령 제851호, 2021, 12, 31., 타법개정]

보건복지부(복지정책과: 총칙, 사회복지사 자격 등) 044-202-3022 보건복지부(사회서비스자원과: 사회복지법인, 임원, 시설) 044-202-3258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외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외명

- 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한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, 2020. 1. 3.>

-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, 1, 3,>

[본조신설 2004. 9. 6.]

[제22조의2에서 이동 ,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<2012. 8. 3.>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, 9, 6, 2012, 8, 3, 2019, 6, 12.>

- 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- 2. 위탁계약기간
-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-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-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-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시설의 우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- 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-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[제23조에서 이동 <2012. 8. 3.>]

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시행 2017.06.08. (제정) 2017.06.08 조례 제1447호

- 제5조(복지관의 운영·관리)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 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·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제6조(위탁계약)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2.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3.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용도 전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, 청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해나 망실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.
- 4.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5. 수탁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의3에 따라 보험가입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6.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와 위·수탁 협약내용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(제정) 2001.04.16 조례 제609호

(전부개정) 2019.10.01 조례 제1716호

(일부개정) 2021.01.12 조례 제1879호

(일부개정) 2021.03.12 조례 제1900호 타 조례개정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주민의 권리 \cdot 의무

- 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-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-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- 3. 경제적 효율성
-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- 5 성과 측정의 용이성
-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-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6조(의회 동의 등)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 시의회(이하 "의회" 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3월 전에 의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1.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- 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위탁사무명
-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3. 위탁사무 내용
-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- 5. 민간위탁기간
- 6. 수탁자 선정방식
-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- 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- 9.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
- 10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- 1. 인력과 기구. 재정부담 능력
- 2.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능력
- 3.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
- 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(부정당업자 제재) 사실
- 5.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
- 6.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
-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(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1.1.12.>
-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〈개정 2021.1.12.〉